

1. 무료소송 지원

□ 근거 :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

□ 지원 내용 : 변호사 수임료(110만원) 지원

☞ 인지대, 송달료등 실비 본인 부담, 패소시 상대측 소송 비용 부담할 수 있음

□ 지원 소송 : 민사소송(채권·채무, 이혼, 가사사건), 각종 신청사건
(가압류, 가처분 등), 소장작성(고소장 등) 대행

□ 지원 대상 : 저소득층, 사회적 약자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도민 및 외국인 등

○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, 소년소녀가장,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 가정 등

○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등

《 지원 제외 대상 》

- ▶ 패소가 분명한 경우 등(수임 예정 변호사 검토결과, 수임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한 사건)
- ▶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결정을 이미 받은 사건
- ▶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
- ▶ 반사회적·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자
- ▶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

※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기준

(기준 : 2025년, 단위 : 원)

구분/가구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
중위소득 80% 이하	1,914,00	3,147,000	4,021,000	4,879,000	5,687,000	6,452,000	
건강 보험	직장	-	112,371	143,298	174,082	201,632	229,454
	지역	-	37,001	75,675	113,431	134,274	167,069
	혼합	-	113,324	144,905	176,291	204,525	232,948

2. 개인회생 · 파산 지원 및 채무자대리인 등

□ 개인회생 · 파산

- 근거 :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
- 지원대상 :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
 - (개인회생) 고정수입 있는 자, 채무액의 30 ~ 40%를 5년간 상환
 - (개인파산) 채무상환 능력 없는 자(노동력 상실 · 무재산 등)
- 지원내용 :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 + 인지대 · 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전액 지원

□ 채무자대리인

- 근거 :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
- 지원대상 :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
- 지원내용 : 변호사 선임해 6개월간 불법 채권 추심 대응
 - 개인회생·파산신청으로 채무조정이 진행 중일 경우, 1회 연장 가능
 - 변호사 수임료 : 30만원 지원 / 우편 비용 등은 본인 부담
- ☞ 채무자대리인 선임시,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할 수 없음(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)

□ 아동·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

- 근거 :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3
- 지원대상 :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 · 청소년
- 지원내용 :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신청서 작성 대행
 - 변호사 신청서 작성 대행비 30만원 지원

참고 1

시군 발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절차

(시·군) 시군 담당자(법무, 사회복지, 주민센터 등) 지원 후보자 발견
※ 가정폭력, 이혼, 채권·채무, 개인 파산 및 회생, 기타 민사, 형사, 가사상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주민



(시·군)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(붙임2 구비서류 참조)
※ 시군에서는 지원 요건 중 형식적 사항(수급자, 중위소득 80% 이하 등)만 확인.
소송필요성, 승소가능성 등의 법적 검토는 도에서 수행



(시·군) 필요한 서류(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) 첨부하여 도 법무담당관으로 공문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도 법무담당관 담당자(8008-2888)에게 문의 후 필요한 서류 직접 제출토록 안내



(도) 도 담당자가 형식적 지원요건 확인 후 수임 예정 변호사와 수임 여부 검토(소송 필요성, 승소가능성 등)



(도) 수임변호사 지정 및 결과통보(신청인, 수임 변호사 및 시·군)



(도) 수임료 등 지원 및 소송 수행

3.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

□ 무료법률상담이란 ?

○ 민사·형사 가사, 행정사건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

- 채권·채무 관계, 불법추심, 개인회생, 파산 등 민사사건
- 상속·증여·이혼 등 가사 사건
- 각종 세무 상담
-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, 주택 거래 분쟁 등 부동산 사건
- 위법·부당한 관공서의 처분(세금부과, 세무조사, 행정처분) 등 행정사건

☞ 부당해고, 임금체불,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 등 노동 사건은 '경기도 노동권익센터'(031-8030-4541)에서 상담 진행

□ 상담 위원 (분야)

- 변호사, 법무사, 세무사, 공인중개사

□ 운영 현황 및 신청 방법

- 신청자격 및 비용 : 도민 누구나, 무료

- 상담시간 : 평일(월~금) 10~12시, 14~17시

- 개인당 20분 상담 원칙

- 상담신청 방법 : 예약 필수

- 온라인 :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'무료법률상담' 검색, 온라인 예약

☞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 충실한 상담이 가능(개인정보는 보호)

☞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경기도 콜센터 031-120로 전화 신청

- 상담방법 : 본인 희망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방문

- 상담실 위치 : 경기도청 3층, 북부청사(의정부) 1층

4.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안내

□ 설치 근거
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및 「경기도 주택(상가건물)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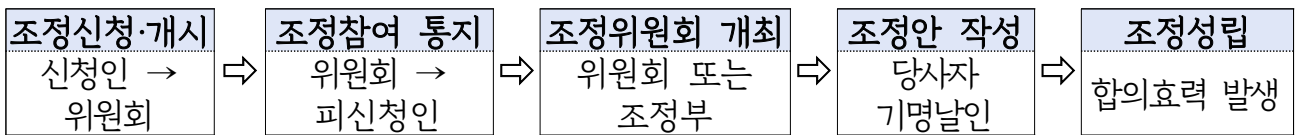
□ 분쟁조정 대상

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, 임대차 기간, 보증금 또는 임차건물 인도, 임차건물 유지·수선, 상가건물 권리금에 대한 분쟁 등

□ 설치 부서

- 경기도 법무담당관(관련 문의 ☎ 031-8008-2236, 2875)

□ 조정 절차



- 위원회는 변호사, 세무사,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
- 신청자격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
-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임대차분쟁조정 신청(증거자료 첨부)
- 수수료는 통상 1만원으로 하되 각하종결된 경우 면제 처리
-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, 관련 분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, 상대방 연락 두절되어 조정절차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각하 종결
- 조정(안)에 대해 당사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미성립 종결됨

□ 조정의 효력

-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사집행법」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조정서 만으로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